

2019. 열린어린이집 지자체 선정기준 수정 안내

□ 인천형 선정기준

교육	내용	수정 전	수정 후	대상
필수 교육	· 아동학대예방교육	- 어린이집 재원 부모의 10%	작동	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부모 (5점)
공통 부모 교육	· 클로버부모교육 · 클로버부모자녀체험 · 자녀권리존중 · 가정 내 놀이 환경 점검 · 영유아 발달이해 · 부모양육태도 점검교육 (2가지)	- 필수교육 이수한 어린이집만 배점 - 공통 부모교육 중 2가지 ※ 필수·공통부모교육 3가지 모두 부모 10%이상 ※ 교육 대상 부모는 동일하지 않아도 됨.	- 필수교육 이수한 어린이집만 배점 - 어린이집 재원부모의 10% 이상 ※ 공통부모교육 2가지 각각 부모참여율이 아니라 공통 부모교육 전체로 부모참여율 확인 ※ 교육 대상 부모는 동일하지 않아도 됨.	

5.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

- (개요) 부모의 교육 참여율과 어린이집 우수 프로그램 운영 여부
- (평정기준) 부모 교육 (필수교육 + 공통부모교육), 어린이집 우수 프로그램
 - 부모 교육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의 10%이상 참여(소수점이하 절사)
 - * 공통부모 교육은 부모의 자율적 선택으로 참여하게 하며, 1가지 교육에서만 재원부모의 10% 이상의 참석은 배점 불 인정, 반드시 2개 이상의 교육 수료에서 재원부모의 10% 이상의 참석이 배점 인정
 - * **공통부모교육 2가지 각각 재원부모의 10%가 아님(공통부모교육 전체로 재원부모의 10% 이상 참여)**
 - 공통부모교육은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외 5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만 인정되며 지역 제한은 없음
 - 형제·자매가 같은 또는 다른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, 영유아 수와 부모교육 참여 수 동일하게 인정
예시) A 어린이집 형제 2명 등원→ 실제 엄마 1인 교육 참석이더라도 교육 참석자는 2인 인정
 - **해당연도 3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운영한 부모참여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 지속가능성, 창의성, 적합성, 성과 등을 고려**
- (확인방법)
 - 교육 수료증 등 증빙자료
 - 참고서식[별지 제6호 서식]을 고려하여 시설개요, 프로그램(필요성 및 목적, 배경, 개요(대상, 기간, 활동내용 등), 프로그램 평가 및 적용) 중심으로 제출분량은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15페이지 내로 한정하여 초과 시 감점 될 수 있음
- (배점) 15점(교육 3회 5점, 어린이집 우수 프로그램 10점)